

광주지방법원 2021. 11. 12 선고 2021가단51158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1. 10. 22.

판 결 선 고 2021. 11. 12.

주 문

1.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5 지분에 관하여 2016. 5. 18.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3,300,000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3,3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 법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윤명화

별지